

●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70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1482호(2021.12.31.)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되고,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590호(2023.10.25.)로 지정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587호(2023.12.29.)로 복합사업계획 승인된 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40조의8에 따라 복합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, 「같은 법」 제17조, 제40조의17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5년 07월 11일

서울특별시장

서울 쌍문역 동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

1. 복합지구 복합사업계획 승인(변경)

- 가. 복합사업계획의 개요 : 변경없음
- 나.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 : 변경없음
- 다.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: 변경없음
- 라.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: 변경없음
- 마.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: 변경없음
- 바. 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: 변경없음
- 사. 총사업비(변경)

구분	(기정)금액(천원)	(변경)금액(천원)	비고
총계	421,292,471	466,305,531	—
대지비	166,275,892	149,491,992	—
주택건축비	238,848,459	295,556,304	—
부대·복리시설 설치비	8,495,462	12,892,705	—
간선시설 설치비	7,672,658	8,364,530	—

2. 도시관리계획 결정 : 변경없음

3.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, 지번, 지목, 면적,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: 변경없음

4. 공공시설 등의 명세 및 처분계획 : 변경없음

5.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의제되는 사항 : 변경없음

6.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: 변경없음

7. 관계서류의 열람방법 :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(02-2133-7069),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(02-2091-3413),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(02-6006-0831)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